

## 大田直轄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227
----------	-----

提出年月日：1993. 3.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融資 對象擴大 및 優先 順位를 設定 地域發展 및 福利增進을 圖謀 하고 融資利率과 償還期間을 改善하여 財政脆弱團體의 元利金償還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改正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가. 公債消化機關이 市·區에서 地方自治團體가 全額을 出資. 出捐한 法人도 包含함 ( 案 第 5 條 )

나. 融資對象에 都市道路事業(都市高遠化·都心迂廻道路事業等)을 包含하도록 함 ( 案 第 9 條 )

다. 融資條件을 다음과 같이 變更함 ( 案 第 10 條)

融 資 對 象	現 行	改 正
上. 下水道事業	2年据置8年均分償還, 年利 8%	2年据置10年均分償還, 年利 7%
公營開發事業	3年据置5年均分償還, 年利 8%	3年据置2年均分償還, 年利 8% (期限前이라도事業完了時 一時償還)
其 他 事 業	3年据置5年均分償還, 年利 8%	變 動 없 음

### 3. 參考事項 (關聯法親)

#### 가. 地方自治法

- 第 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必要한 境遇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資金을 積立하거나 또는 기금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資金의 積立 및 基金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 나. 地方財政法

- 第 110條 (基金의 運營等)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特別한 目的을 위하여 適正하고 效率的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中 大統領이 정하는 事業의 支援을 目的으로하는 基金의 境遇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 다.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

- 第 1 條 (目的) 이 條例는 大田直轄市(이하 “市”라 한다)의 住民福利增進과 地方公企業 및 地域開發事業을 支援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調達·供給하고자 大田直轄市地域開發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하는데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대전직할시 조례제 호

## 대전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에 출연 하여야 한다”를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로 한다.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고 각종 기금증식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 방법에 의하여 시·구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등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인쇄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소화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용자순위) 기금 자금은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 사업등)에 우선용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용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한다.

4 (第19回 臨時會 - 本會議 第2次 別添)

제10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상·하수도사업 : 년리 7%,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 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타사업 : 년리 8%

②용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되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 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공영개발사업 :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
3. 기 타 사 업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③시장이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의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 수급사정을 감안 하여 분기1회 용자한다. 다만, 시장이 용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 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금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전기금 및 이익금의 반환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기획과장, 하수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 (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각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하수도 지원금과 기금</li> <li>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li> <li>3. 시도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li> <li>4. 지방채 발행 수입</li> <li>5. 기금의 운용수익금</li> <li>6.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자금</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 신설 &gt;</p> <p>②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p>	<p>제3조 (재원조달) ①(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 <u>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고 각종기금증식등 자금의 효율적인영을 위하여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진입, 출연하는 금액</u></p> <p>7. <u>기타 기금의조성을 위한 지원금</u></p> <p>② ----- <u>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u></p>		
<p>제5조 (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 방법의하여 시·구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등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구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한 지방채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 신설 &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소화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인센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소화할 수 있다.</p>	<p>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p> <p>시·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 이조례</p> <p>② 시의 ----- 이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 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9조 (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융자하되, 지역발전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p>	<p>제 9조 (융자순위)-----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 (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사업등) 에 우선 융자하되, -----</p>		
<p>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따라 년7%이상 8%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p>	<p>제 10 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p> <p>1. -----</p> <p>원금상환이 관련한 재정회계년도를 -----</p> <p>2. -----</p>		

현	개	정	안
<p>① 융자금의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환기간은 2년거 치 8년균분상환, 기타사업의 경우 3년거치 5년균분상환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거치의 범위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실행계획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p>	<p>① 융자금의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환기간은 상환기간 만료일이라도 분할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잔다 사업은 부차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p> <p>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공영 개발 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3. 기 타 사 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p> <p>③ 시장이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 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의 용도를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p>	<p>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의 용도를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p>		
<p>제11조 (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에 따라 융자받은 원칙으로 하고 당해년도 지방채를 수입공과금기금에 역채한다. 다만, 시의 재정상태에 융자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을 ② (상 락)</p>	<p>제11조 (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전용 자금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회 용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 사업의 지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금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p>		
<p>제12조 (기금의 수입및 지출) ① 상 락</p> <p>② 상 락</p> <p>1. 상 락</p> <p>2. 상 락</p> <p>3. 상 락</p> <p style="text-align: right;">&lt; 신설 &gt;</p>	<p>제12조 (기금의 수입및 지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p> <p>2. ( # )</p> <p>3. ( # )</p> <p>4. 회전기금 및 이식금의 반환</p>		
<p>제15조 (위원장 및 위원) ① (상 락)</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은수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업무과장, 하수과장을 관계 사업과장 으로 구성한다.</p> <p>③ (상 락)</p>	<p>제15조 (위원장 및 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도시계획과장, 주택기획과장, 하수과장, 상수도 사업본부 총무부장,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 ----- -----</p> <p>③ (현행과 같음)</p>		

大田直轄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3. 3. 26

內 務 委 員 會

# 目 次

I. 審 查 經 過	-----2
II. 提 案 說 明 要 旨	-----2
III. 專 門 委 員 檢 討 要 旨	-----3
IV. 討 論 要 旨	-----6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6
VI. 審 查 結 果	-----7
V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7

大田直轄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3년 3월 26일  
內 務 委 員 會

I. 審 查 經 過

1.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3月 11日 大田直轄市長
2. 回附日字 : 1993年 3月 12日
3. 上程日字 : 第1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1993. 3. 23)  
上程, 審議, 議決

II.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企劃管理室長)

1. 提 案 理 由

融資對象擴大 및 優先 順位를 設定 地域開發 및 福利增進을 圖謀하고 融資利子率과 償還期間을 改善하여 財政脆弱團體의 元利金 償還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改正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가. 公債消化機關이 市·區에서 地方自治團體가 全額을 出資·出捐한 法人도 包含함. (案 第5條)

나. 融資對象에 都市道路事業(都市高速化·都心迂廻道路事業等)을 포함하도록 함. (案 第9條)

다. 融資案件을 다음과 같이 變更함. (案 第10條)

融 資 對 象	現 行	改 正
上·下水道事業	2年据置8年均分償還, 年利8%	2年据置10年均分償還, 年利7%
公營開發事業	3年据置5年均分償還, 年利8%	3年据置2年均分償還, 年利8% (期限前이라도 事業完了時 一時償還)
其 他 事 業	3年据置5年均分償還, 年利8%	變 動 없 음

### Ⅲ. 專門委員 檢討要旨(專門委員 : 鄭泰益)

本 案件은 現 地域開發基金의 融資對象範圍를 擴大하고 融資優先 順位를 設定하는 한편, 融資利率과 償還期間을 改善하여 基金運營에 圓滑을 기하고자 하는 內容임.

主要內容으로는

첫째, 案 第3條 1項의 財源調達方法에 “一般會計등에서 自體 基金內 別途 回轉基金으로 運營코자 轉入·出捐”하는 경우에도 이를 財源確保 方案으로 包含하였음.

이는 一般會計의 餘裕 回轉資金을 自體 基金으로 活用하고 出捐한 一般會計의 資金을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음.

둘째, 案 第5條의 地方債 消化 方法으로써 現行 “市·區로부터 免許, 許可, 認可登錄을 받을 시와 市·區와 建設工事의 都給契約 등 各種 契約을 締結할 境遇에 賣出” 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契約時 賣出에 있어서 “市·區 및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 全額을 出資·出捐한 法人과 契約을 맺을 경우에는 地方債를 消化토록 하였는바, 이는 地方自治에 따른 民間參與등에 對備한 長期的인 賣出方案으로 취해진 것이라 하겠음.

셋째, 案 第9條의 基金融資 順位로써 現在는 上下水道事業에 優先하여 融資하였으나, 여기에 都市道路事業을 追加하여 都市 基盤 施設의 開發을 促進토록 하였음.

넷째, 案 第10條의 融資條件으로는 現 利率이 年 7%以上 8%以下로 規定되어 있으나, 이를 區分하여 “上下水道事業은 7%로 여타事業은 8%로 調整하였음.

그리고 償還條件에 있어서는

上下水道事業이 2年据置 8年均分 償還에서 2年据置 10年均分 償還으로 2年을 延長하여 調整하였고

其他事業은 3年据置 5年均分 償還이었으나, 이중 公營開發事業을 別途로 3年据置 2年均分 償還으로 償還期間을 3年 短縮 하였음.

이와같이 上下水道事業의 利率을 現行 8%에서 7%로 引下하고 償還期間을 2년 延長한 緩和措置는 上下水道事業이 市民生活과

密接한 公益性을 지니고 있어, 公共性과 事業의 繼續性을 勘案하여 취해진 措置라 하겠음.

그리고 公營開發事業에 대한 償還期間 短縮은 公營開發事業이 대부분 3年내지 5年の 短期事業이며 利潤追求를 前提로한 經營收益事業으로써 事業終了와 함께 融資金을 全額 回收코자 하는 것이라 하겠음.

다섯째, 案 第11條의 基金融資 時期에 있어서는 當該年度 9月 以前에는 基金引出을 抑制하였으나, 分期 1회로 融資時期의 폭을 擴大하여 基金 需要에 따라 彈力的으로 活用하고 事業推進에 圓滑을 기하도록 한것이라 하겠음.

여섯째, 案 第15條 2項에서 關係部署의 課長級으로 構成되어 있는 地域開發基金 管理委員會 委員을 一部 調整코자 하는 것으로 本 基金運營과 關聯이 적은 地域經濟課長을 除外하고 職制 改編으로 廢止된 觀光運輸課長, 業務課長을 削除하여 여기에 上水道事業本部 總務部長과 公營開發事業團 管理課長을 새로운 委員으로 하였음.

이상과 같이 本 地域開發基金의 管理, 運營方向을 一部 調整한 것은 地方財政의 長期的 圓滑을 기하고 地域開發基金의 健全한 運營을 위해 取해진 措置로써 改正 施行함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됨.

#### IV. 討 論 要 旨

- 地域開發基金 造成 規模
- 地域開發基金 融資 狀況
- 利率 및 償還期間 調整 事項
- 地域開發基金 效率的 管理 運營 方案
- 公債賣出計劃 및 向後 賣出展望등

####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93年度 地域開發基金 480億 원의 融資計劃	○ 93年度 豫算 反映分으로 - 上水道事業 : 91億 - 下水道事業 : 20億 - 公營開發事業 : 100億 - 쓰레기埋立場事業:100億 - 其他 經營事業 : 170億
○ 上下水道事業의 境遇 融資 利率과 償還條件을 緩和 調整한 理由	○ 上下水道事業이 市民生活과 密接한 公共性을 띠고 있으며, 事業의 繼續性을 考慮 하여 緩和하였음.
○ 向後 上水道事業이 赤字 運營될 境遇 償還期間 再緩和 措置  가능한지	○ 長期化될 경우 資金回轉에 問題가 있어 곤란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 今番 改正案의 根本 趣旨는</p> <p>○ 基金의 優先 融資順位에 都市道路事業을 追加하여 利率을 8%로 하였는데 上水道事業의 7%보다 1%가 높은 理由는</p> <p>○ 資金 需給計劃을 現在 年1回에서 年4回로 調整한 理由</p> <p>○ 地方債 消化에 있어서 市 區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出資金을 全額 出捐한 法人이 建設工事와 契約 締結을 할 境遇에도 公債를 消化토록 한것은</p>	<p>○ 地域開發基金 運營의 從前 問題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것임.</p> <p>○ 上下水道事業은 公共目的에 特殊性을 考慮한 것이고, 道路事業은 從前의 利率을 勘案하여 適正 水準으로 判斷한 것임.</p> <p>○ 事業計劃 및 工程에 따라 彈力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여유를 둔 것임.</p> <p>○ 地方自治에 對備하여 自治 團體가 全額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에 適用키 위한 것으로 現在는 自治團體에서 全額 出資한 法人이 없는 實情임.</p>

VI. 審査結果 : 原案 可決

V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